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 승객용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이 개정('22.10.2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승강구 개폐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좌측면에 승강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오작동 방지를 위한 승강구 개폐 오작동 방지 장치 및 내부 장치 설치기준 등 승합자동차 좌측면의 승강구 설치 규정 마련(안 별표2의 제25호의3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2.19.(월)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나.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
(우편번호 30103)
- 2) 전화/팩스: 044-201-3850, 3853 / 044-201-5584
- 3) 이메일: kkimax@korea.kr